

활력있는 군정 반영하는 남해

2022. 1. 10.(월) 11:00

미조면 2층 대회의실

1月 里長會議

會議資料



彌 助 面



목 차

○ 총 무 팀

1. 「사회적 거리두기」 방역수칙 안내 4
2. 동절기 한파에 따른 사전 대비 철저 4
3. 이장 단체상해공제 안내 5
4.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안내 5
5. 지방세 납부 홍보 5

○ 맞 춤 형 복 지 팀

1. 2022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6
2. 2022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유효기간 만료 안내 6
3.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및 홍보 7
4. 2022년 남해군 청년씨앗통장 사업 안내 8

○ 산 업 경 제 팀

1. 투명페트병 및 비닐류 별도 분리배출 안내 9
2. '22년산 마늘경작신고 안내 9
3. 2021 ~ 2022년 산불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 및 협조 10

총 무 팀

1 「사회적 거리두기」 방역수칙 안내

- 기 간 : 2022. 1. 3.(월) 0시 ~ 2022. 1. 16.(일) 24시
- 주요방역수칙

공통 방역수칙	
마스크 착용	▶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·외에서 마스크 착용
기본 방역수칙	▶ 방역수칙 게시·안내 ▶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▶ 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·안심콜 등) ▶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▶ 일 1회 이상 소독
모임·행사 집회	
사적 모임	▶ 4명까지 모임 가능(미접종자·접종완료자 구분 없음) ▶ (식당·카페에서는) 4명까지 모임 가능 - 단,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(미접종자 1인·단독 이용만 가능)
기타 행사모임	▶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가능 ▶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~ 299명까지 가능 * (접종완료자 등) : 접종 완료자, PCR검사 음성자(48시간 이내), 완치자,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

-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변경사항
 - 기 간 : 2022. 1. 4.(화) 0시 ~ 본안판결 선고일
 - 내 용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학원 등*	방역패스 적용	방역패스 적용 해제
독서실·스터디 카페		

*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시설 포함

2 동절기 한파에 따른 사전 대비 철저

- 각 가정 수도시설 사전 점검·대비
- 결빙 취약지역(도로, 마을안길 등) 사전 점검
- 마을방송 홍보 철저



3 이장 단체상해공제 안내

- 가입기간 : 2021. 11. 17. ~ 2022. 11. 16. (1년 단위 갱신)
- 가입인원 : 남해군 이장 221명
- 보험종류 : 단체상해공제(1년 만기) / 생명·상해·치료비 보장
- 보장범위 : 직무수행과 관련없이 24시간 365일 적용
- 청구방법 : 청구서 및 필요서류 첨부하여 Fax 또는 등기우편
 ※ 우편)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31층
 (DB손해보험 상해보험 2부 이·통장 단체상해보험)
- ※ ☎ 02-3011-5019 / Fax 0505-181-0776

4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안내

- 공모대상 : 청년단체(영리·비영리 또는 컨소시엄 가능, 임의 단체 불가)
- 지원금액 : 대상 지역별 2억원
 ※ 최종 선정 시 3년간(2022~2024년)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 지원 예정
- 사업기간 : 2022. 5월~11월
- 신청기간 : 2022. 1. 5.(수)~1. 28.(금)
- 신청방법 : 청년단체→남해군청 청년혁신과(☎860-3468)
- 제출서류 : 청년단체 사업계획서, 자치단체 지원계획, 접수대장

5 지방세 납부 홍보

- 체납현황(1. 7.기준) (단위 : 건/천원)

세 목 명	체납현황		비 고 (부과월)
	건 수	금 액	
합 계	519	31,503	
등록면허세	20	188	1월
자동차세	159	21,072	6월·12월
재산세	224	7,076	7월·9월
주민세	106	1,439	8월
지방소득세	10	1,728	수시

- 체납세 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
- 마을별 주요 체납자 납부독려 협조

맞춤형복지팀

1 2022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

- 지원금액 : 출생아 당 200만원의 이용권
- 지급방식 : 국민행복카드 이용권(포인트)
- 신청방법 :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(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)
- 사용시작일 : 이용권 지급일(포인트 생성일)
- 사용종료일 :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일)로부터 1년
- 사용처 : 유흥업종, 사행업종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 제외), 레저업종,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,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(온라인구매 포함)에서 사용 가능
- 문의처 : 맞춤형복지팀 반시은 (☎055-860-8214)

2 2022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유효기간 만료 안내

- 내용 : 장애인 통합복지카드(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) 발급자 중 2022년에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및 재발급 처리
- 대상 :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만료자 15명
- 기간 : 연중
- 문의처 : 맞춤형복지팀 반시은 (☎055-860-8214)

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및 홍보

- 제도안내 : 인감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을 통해 확인서 발급하며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
- 장 점
 -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음
 - 최초발급 시 인감처럼 면사무소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음
 -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위조 불가능
- 인감증명서와의 비교

구 분	인감증명서	본인서명사실확인서
사전절차	인감도장 제작 및 주민등록 주소지 면사무소에서 인감 등록	사전절차 없음
신청주체	본인 또는 대리인	본인(대리인x)
확인방법	인감날인	본인 자필 서명
사용용도	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/일반 예금 및 출자금 상속, 근저당설정	동일

- 협조사항 : 업무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활용하여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 협조
 - ※ 본인 방문이 어려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 이용
- 문 의 처 : 맞춤형복지팀 정준환(☎055-860-8215)

4 2022년 남해군 청년씨앗통장 사업 안내

- 신청자격 : 주민등록상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~34세 청년으로
2개월 이상 근로중인 중위소득 130% 이하인 청년
- 신청기간 : 1. 11.(화) ~ 1. 21.(금)
- 사업내용 :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월 일정금액(20만원)을 적립하고, 군지원금을
1:1 매칭 적립(20만원)하여 만기(1년)시 목돈(480만원) 지급
- 지원 인원 : 57명(군 전체)
- 문 의 처 : 맞춤형복지팀 최영훈 (☎055-860-8213)

산 업 경 제 팀

1 투명페트병 및 비닐류 별도 분리배출 안내

□ 투병페트병 배출

- 배출품목 :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(음료병, 생수병)
- 제외품목 : 1회용컵, 갈색 맥주병, 흰색 막걸리병 등
 - ※ 제외 품목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
- 배출요일 : 목요일(미조면) ※플라스틱과 별도로 투명비닐에 배출

□ 비닐류 배출

- 배출품목 :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 비닐류
- 제외품목 : 은박지, 이물질이 묻은 비닐, 비닐랩 등
- 배출요일 : 목요일(미조면) ※플라스틱과 별도로 투명비닐에 배출

□ 협조사항

- 마을회관에 투명페트병 및 비닐류 전용수거봉투 비치
- 전용수거봉투에 다른 재활용품은 절대 넣지 않도록 안내
- 마을방송 홍보 및 주민 안내 협조

2 '22년산 마늘경작신고 안내

- 목 적 : 마늘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,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여
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
- 의무신고대상 : 마늘 경작(재배면적 1,000㎡이상) 농업경영체
 - ※ 재배면적 1,000㎡미만 농업경영체는 임의 신고대상
- 집중신고기간 : ~ 2022. 1. 20.까지
- 신고방법 : 면사무소 서면 신고
 - ※ 신고서식 : 산업경제팀 비치

3 2021 ~ 2022년 산불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 및 협조

- **기 간 : 2021. 11. 1. ~ 2022. 5. 15.**
- 협조사항
 - 주민 홍보(1일 1회 이상 마을 안내방송 등)
 - 산불감시원이 없는 야간 시간대 마을별 소각 행위 금지 등 유의
 - 산불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협조
- 홍보사항
 - 등산 등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, 담배꽂초 투기 금지, 쓰레기소각 금지
 - ※ 산림과 인접한 논·밭에서 행하는 소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

《산림보호법 제53조(벌칙) 및 제57조(과태료)》

- 산불방화범은 7년이상 15년이하 징역, 과실범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-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 피운 자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화기, 인화물질,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,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자 등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《산불조심 홍보 방송문》

- 마을회관에서 알려드립니다.
- 주민 여러분께 산불방지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.
 - 지금은 산불조심 기간입니다.
 -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며, 입산자의 실화, **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태우기**와 성묘객 실화에 의해 주로 일어납니다.
 - 산 인근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태우다 적발 될 시 최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산불 발화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오니, 산불 조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우리 모두 다함께 산불을 사전에 예방합시다.
- 감사합니다.